

1. 개정이유

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에 대한 점검 및 조치,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17958호, 2021. 3. 23. 공포, 2021. 9. 2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 등(안 제25조의2)

시설·설비에 대해서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‘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 기준’에 따르고, 교구 중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·칠판·책상·걸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되,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교육부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 등) 법 제30조의9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대상,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시설·설비: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‘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 기준’에 따른다.

2. 교구

가.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·칠판·책상·걸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한다.

나.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5조의2(시설·설비·교구의</u> <u>점검 등) 법 제30조의9제1항에</u> <u>따른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의</u> <u>점검대상,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</u> <u>구분에 따른다.</u> <u>1. 시설·설비: 「교육시설 등의</u> <u>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10조에 따른 ‘교육시</u> <u>설의 안전·유지관리 기준’에</u> <u>따른다.</u> <u>2. 교구</u> <u>가.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</u> <u>수업용 시청각 장비·철판·</u> <u>책상·결상에 대하여 연 1회</u> <u>이상 점검한다.</u> <u>나.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</u> <u>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</u> <u>정한다.</u>		